

의료세탁물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통영적십자병원 의료세탁물 위탁 용역

나. 용역범위

-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오염세탁물 처리
- 2) 기타 본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탁물 등의 처리 (직원 근무복을 포함)

다. 운영병상 : 99병상

라. 수행기간 : 2026.09.01. ~ 2027.08.31.(1년)

2. 과업 지시사항

가. 세탁방법

- 1)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전염성세탁물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독 작업 완료 후 세탁작업을 실시한다.
- 2) 12공정에 의한 예비세탁, 본세탁, 표백, 행굼, 건조, 다림질, 마감순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3) 세탁수 및 세제 : 세탁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교환하고, 비누, 염소계표백제, 세탁제를 사용하여 오물을 제거한다. 혼합원단(50%)의 천은 세탁시 목면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과 같으며, 원단의 손상이 적은 인공 세척제를 사용한다. 표백제는 원단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적정농도의 염소가 포함된 것으로 건조 표백에 사용 하여야 한다.
- 4) 박테리아 제균성을 가진 세척제라고 해서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5) 수온 : 관련 법령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기준에 따른 살균기준을 준수한다.
- 6) 세탁물 살균처리 : 염소계 표백제는 세탁시 표백작용에 사용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살균제를 사용하여 살균을 한다.
- 7) 세탁물을 따뜻한 회전통에서 건조하고, 건조 후 열기를 차단하고 통속에 찬공기를 주입한다.
- 8) 세탁시 세탁물 처리 용량은 세탁기 회전통의 최대 용량보다 20%적게 넣어야 한다.
- 9) 세탁물은 오염된 세탁물, 표백제 사용을 요하는 세탁물, 소독을 요하는 세탁물 기타로철저히 분리하여 세탁물의 원상 보존도와 내구성을 높인다.
- 10) 오염된 세탁물은 고온 세탁과, 세척제, 소독약으로 세척한다.

나. 일반사항 : 사용부서에 세탁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청결 세탁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음의 각 항목을 준수한다.

- 1) 계약상대방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 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수선이 필요한 세탁물은 위탁업체에서 수선하여야 하며, 수선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 인계하여 조치토록 한다.
- 3) 연휴 기간 중 세탁물 수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계획하여 발주처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휴에 따른 휴무는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세탁물은 각기 크기 및 종류별로 다림질하여 일정 분량으로 묶어서 납품한다.
- 5) 발주처는 해당 업체의 사용인이 세탁 수거 업무를 태만하거나 및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세탁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6) 병원으로부터 인수한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 또는 동등이상 물품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7) 세탁물 수거 및 운반, 관리 등 세탁물 처리 용역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병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이 발주처의 책임 또는 본인의 책임 없음을 증빙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세탁물 수거

- 1) 세탁물은 반드시 세탁 망에 수집하여 운반하여 하며, 세탁 망 입구를 묶어 내용물이 돌출되거나, 흐르지 않게 조치한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 2) 세탁물은 주 5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수거한 세탁물은 다음 수거 시 까지 세탁을 완료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 3) 세탁물 수거 직원은 세탁물 수거 시 “세탁물대장”을 반드시 매일 기재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이 완료되는 때에는 매년 해당 관공서에 보고하여야 하는 세탁물 처리 기록을 정리하여 발주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주처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세탁물의 보관 및 분류

- 1) 수집된 세탁물은 반드시 세탁물 수집 장소로 모아 이송하여야 한다.
- 2)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분류한다.
- 3) 수집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세탁물 망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반드시 봉하여 처리토록 한다.

마. 세탁업체와의 업무처리

- 1) 계약상대방은 청결하게 세탁된 세탁물을 납품명세서와 함께 매일 일정한 시간까지 공급 공급하고, 병원 세탁물 담당직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 2) 당월 세탁물 처리 분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매월 말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주처로 대금을 청구한다.

바. 감염방지 : 병원 세탁물은 세균 등이 묻어있어 세탁물 취급으로 인한 감염원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 하여야 한다.

사. 세탁물 공급

- 1) 계약상대방은 세탁물 수거 및 완료 시까지 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2) 세탁물은 수술실 및 3층 린넨실까지 운반·공급한다.(지정장소에 비치)
- 3) 세탁물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 5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의 필요 시 납품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4) 세탁 후 재세탁 등의 이유로 미 입고되는 수량은 전체 세탁물 수량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5) 출고된 세탁물은 2일 이내에 입고되어야 하며 만일 입고가 지연되거나 분실, 훼손되어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망실시에는 새제품 기준의 가격으로 변상하고, 훼손 시 수선 가능하면 수선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망실 시와 같다.)

아. 세탁 및 마무리손질

- 1) 세탁물은 위탁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 2) 일반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은 구분하여 세탁한다.
- 3) 오염 세탁물은 저온처리, 소독과정, 삶는 과정 등의 공인된 오염처리 규정에 따라 세탁처리 한다.
- 4) 세탁을 청결히 하면서도 세탁물의 탈색이나 손상을 최소화한다.

- 5) 세탁상태가 불량한 세탁물은 재 세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 세탁물은 전체 세탁물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6)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잘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의사, 직원근무복, 건강검진센터 가운은 별도의 다림질을 한다.
- 7) 이불, 담요, Scrub Suit, 성인 환의, 보호자 면회용 가운, 방사선과 가운 등 색깔이 선명한 세탁물은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8)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가운, 조끼, 대공포 등은 수술실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납품하여야 한다.
- 9) 다림질이 필요한 세탁물은 반드시 다림질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기계식 접기 및 포장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원에서 취급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자. 세탁물 운반 및 분류, 수선

- 1) 세탁 완료된 모든 린넨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며, 10, 20, 30, 50개씩 묶어 청결한 자루에 일정 수의 묶음으로 분리하여 병원에서 세탁물의 수량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2) 환의, Scrub Suit은 특히 Size를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3)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 중 수술실 Package에 들어가는 품목은 Package에 바로 넣어 Packing할 수 있도록 접어서 일정수량씩 묶어 납품하여야 한다.(Gown, Half Sheet, Skin Towel, Hand Towel 등)
- 4) 세탁 후 수선을 요하는 품목은 수선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선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모아 검수 후 세탁물 담당직원에게 인수·인계한다.
- 5) 청결한 세탁물의 반입차량과 수거한 세탁물 반출 차량은 별도로 운영하여 세탁 후의 린넨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6) 그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세탁물이 세탁물 수집실이나 기타 장소에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되며 전량수거, 전량세탁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운반차량은 밀폐 또는 냉장시설로 악취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8) 용역업체와 병원간의 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용역업체에서 일정량 제작하여 사용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주1회이상) 점검하고 청소하여 세탁물 수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10) 세탁물 운반용 Cart에는 Cover를 씌우되 깨끗하고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병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차. 직원 교육 및 감염관리

- 1) 세탁물 수거 및 공급 직원은 감염예방, 산업안전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은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배송직원의 전염성 질병 등의 확인 또는 의심 시에는 즉시 그 직원에 의한 배송을 중지하고 병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병원에 위해를 입게 되거나,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카. 계약 해지 :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의 발생 시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계속 중에도 손해의 전부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1)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세탁물의 처리가 미비하여 수차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 2) 폐업, 업무정지 또는 행정관서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고 등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3) 계약서 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태하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때
- 4) 전염성, 감염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태하여 병원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을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때
- 5)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 등으로 병원이 손실을 부담하게 된 때
- 6) 상기의 계약해지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 안전관리 의무

- 1) 계약상대방은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방은 종사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 안전사고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 4)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방은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